

교원인사규정에 대한 특례규정

제정 2020.04.06. 개정 2020.05.18., 개정2021.06.14., 개정2021.12.21. 개정2022.07.25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구조조정 등에 따른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 교원에 대한 예우와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)

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, 특별승진임용 심사기준은 제3조에 의한다. 승진 임용 시기는 퇴직일 기준으로 하며 교원인사위원회 제청으로 총장이 정한다. <개정2021.12.21.>

제3조 (특별승진임용 심사기준)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.<개정2021.12.21.>

직 위	연구실적	강의평가	업적평가
조교수→부교수	200%	70점	60점
부교수→교수(6년 계약)	200%	70점	60점

1. 연구실적은 누적 계산한다. <개정 2022.07.25.>

- 가. 조교수에서 부교수의 승진은 승진예정일로부터 최근 7년 이내의 실적 합산
- 나.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은 승진예정일로부터 최근 6년 이내의 실적 합산

2. 강의평가는 평균점수로 한다.(소수점 이하 절사)

- 가. 조교수에서 부교수의 승진은 승진예정일로부터 최근 7년 이내의 평균점수
- 나.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은 승진예정일로부터 최근 6년 이내의 평균점수

3. 업적평가는 평가를 면제받은 년도를 제외한 최근 3개년의 평균점수로 한다. (소수점 이하 절사)

제4조 (준용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교원 인사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 (2020.04.06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05.18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06.14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12.21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07.25>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